

민원 상세

일반민원

민원정보

신청번호	1AA-2101-0594780	접수번호	2AA-2101-0615000
신청경로	기관홈페이지	기관메뉴/접수경로	전자민원신청
진행상황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민원답변통지방식	누리집(홈페이지)
신청일시	2021-01-21 12:55:02	접수일시	2021-01-21 18:29:27
민원제목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 방법에 대한 불만입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p>제100조의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p> <p>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p> <p>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p> <p>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p> <p>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법조항은 “③ 영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발주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각 지자체 마다 모집공고시기 및 지정 방법이 다 달라서 안전점검 기관에서는 모집공고를 놓치거나 어느 지자체는 모집공고 없이 등</p>		

록기관만 공고하는 경우도 있으며,
지정방법도 입찰도 아니고 또한 등록업체에서도 안전점검이나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업무를 하지 않는 등록기관이 속출하여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이 지연되는 번거로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등록업체나 지정업체는 안전점검 비용을 엄청 높게 책정하여 건설시공사의 건축비용을 높이고 있으며
등록 시기를 파악하지 못한 업체는 일을 할수 없을 지경입니다.
최소한 국토부에서 안전점검기관으로 알수 있는 공문이나 재정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공고해 주시고
각 지자체가 일부 안전점검 수행기관만 등록시켜서 점검비용만 높이며 일하고 있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민원종류	민원처리기간	처리완료예정일: 2021-02-01 23:59:59 설정된 처리기간: 7
------	--------	--

공통사항

민원요지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공고 및 지정 방법 개선
민원공개여부	비공개
열람범위	<input checked="" type="radio"/> 부서(일반) <input type="radio"/> 부서(보안) <input type="radio"/> 비공개 ※ 부서(보안), 비공개 설정 시, 부서 내 타 직원 등의 조회가 제한되며, 민원공개여부는 "비공개"로 자동 전환 됩니다.
업무분야	건설>건설정책>기타
관리유형	<input type="checkbox"/> 긴급민원 <input type="checkbox"/> 민원동향 <input type="checkbox"/> 집단민원 <input type="checkbox"/> 제도개선필요

처리결과

처리부서	건설안전과	담당자	한병주
관리부서	건설안전과	사후관리담당자	한병주
전화번호	044-201-3508	E-MAIL	hanju1@korea.kr
관련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		
민원종류	기타민원	처리구분	해결